

#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(전철전력편) 개정(일부) 비교표

2014. 12. 08.

## (제 I 권) 총 칙

현행 전문시방서(2014.09.25)	개정 2014.12.08	사유
<p><b>EZ030202 자재수급계획</b></p> <p>1.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2 자재의 검토 승인</p> <p>2.1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또는 종합시공계획서 승인 후 <u>30일</u>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,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</p> <p>2.2 시공자가 제출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는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3 시공자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에 대비하여야 한다.</p> <p>2.4 공급원 신청 시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2.4.1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</p> <p>2.4.2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</p> <p>2.4.3 납품실적증명 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서</p> <p>2.4.4 시험성과 대비 표(선정기준)</p> <p>2.4.5 한국산업표준(KS) 허가 사본</p> <p>2.4.6 제품설명서</p> <p>2.4.7 견본품 - 필요시</p> <p>2.4.8 국제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</p> <p><u>2.4.9 추가</u></p> <p>2.5 시공자는 공급원이 단일일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</p>	<p><b>EZ030202 자재수급계획</b></p> <p>1.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2 자재의 검토 승인</p> <p>2.1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또는 종합시공계획서 승인 후 <b>60일</b>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,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</p> <p>2.2 시공자가 제출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는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3 시공자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에 대비하여야 한다.</p> <p>2.4 공급원 신청 시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2.4.1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</p> <p>2.4.2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</p> <p>2.4.3 납품실적증명 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서</p> <p>2.4.4 시험성과 대비 표(선정기준)</p> <p>2.4.5 한국산업표준(KS) 허가 사본</p> <p>2.4.6 제품설명서</p> <p>2.4.7 견본품 - 필요시</p> <p>2.4.8 국제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</p> <p><b>2.4.9 기타 이외의 사항은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른다</b></p> <p>2.5 시공자는 공급원이 단일일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</p>	<p>현장의 소리(VOC) 수집결과보고 설계기준치-3532호('14.11.28)에 따른 개정</p> <p>※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(시판절-25)와 일치</p>

<p>현행 전문시방서(2014.09.25)</p>	<p>개정 2014.12.08</p>	<p>사유</p>
<p><b>EN010905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가선 및 전차선의 본선 접속은 피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차선의 국부 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전차선 상호간 접속은 직선형접속 클램프로 하되 더블이어를 사용하여 접속할 때에는 이어금구 3개를 사용하여 이어의 상호간격이 300mm 가 되도록 설치하고 더블이어 끝에서 50~60mm 떨어져서 전차선의 선단을 활꼴 모양으로 매끈하게 구부려 50~60mm 남겨서 절단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시 충격으로 진동과 국부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. 그리고 더블이어의 체부력은 14,700 N-cm 이상이 되게 체결해야 한다.</li> <li>3. 건널선 개소에 있어서 전차선의 접속개소는 각각의 궤도 중심선과 전차선과의 이격거리가 0~1200mm 범위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.</li> <li>4. 전차선의 무효부분에서 전차선과 대용전차선과의 접속은 수평방향으로는 1m 이상, 수직방향으로는 전차선보다 0.2m이상 되는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.</li> <li>5. 신설하는 본선의 전차선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접속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접속할 때에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.</li> <li>6.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.</li> </ol>	<p><b>EN010905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가선 및 전차선의 본선 접속은 피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차선의 국부 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전차선 상호간 접속은 직선형접속 클램프로 하되 더블이어를 사용하여 접속할 때에는 이어금구 3개를 사용하여 이어의 상호간격이 300mm 가 되도록 설치하고 더블이어 끝에서 50~60mm 떨어져서 전차선의 선단을 활꼴 모양으로 매끈하게 구부려 50~60mm 남겨서 절단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시 충격으로 진동과 국부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. 그리고 더블이어의 체부력은 14,700 N-cm 이상이 되게 체결해야 한다.</li> <li>3. 건널선 개소에 있어서 전차선의 접속개소는 각각의 궤도 중심선과 전차선과의 이격거리가 0~1200mm 범위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.</li> <li>4. 전차선의 무효부분에서 전차선과 대용전차선과의 접속은 수평방향으로는 1m 이상, 수직방향으로는 전차선보다 0.2m이상 되는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.</li> <li>5. 신설하는 본선의 전차선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접속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접속할 때에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.</li> <li>6.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.</li> </ol>	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행 전문시방서(2014.09.25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 2014.12.08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유</p>
<p>6.1 조가선의 접속은 압축접속 또는 접속금구로 접속하며, 접속금구로 접속한 경우에는 상호 균압 한다.</p> <p>6.2 기 설치된 아연도강연선은 접속금구(BW)로 접속한다.</p> <p>6.3 조가선과 피복조가선의 접속 및 피복 조가선 서로간을 접속할 때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 하며, 조가선의 심선은 슬리브 내부로 끝까지 삽입하고 압착 개소에서 정하여진 슬리브 폭이 되도록 압착하여 가선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6.4 썬기형 클램프 접속은 지지점에서 <u>5m</u>이내에서 접속하고 상호 균압 하여야 한다.</p> <p>6.5 피복조가선을 압축접속 시 한 섹션구간의 장력추를 올려 고정 시킨 후 접속하여 조가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.</p>	<p>6.1 조가선의 접속은 압축접속 또는 접속금구로 접속하며, 접속금구로 접속한 경우에는 상호 균압 한다.</p> <p>6.2 기 설치된 아연도강연선은 접속금구(BW)로 접속한다.</p> <p>6.3 조가선과 피복조가선의 접속 및 피복 조가선 서로간을 접속할 때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 하며, 조가선의 심선은 슬리브 내부로 끝까지 삽입하고 압착 개소에서 정하여진 슬리브 폭이 되도록 압착하여 가선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6.4 썬기형 클램프 접속은 지지점에서 <b>4.5m</b>이내에서 접속하고 상호 균압 하여야 한다.</p> <p>6.5 피복조가선을 압축접속 시 한 섹션구간의 장력추를 올려 고정 시킨 후 접속하여 조가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.</p>	<p>현장의 소리(VOC) 수집결과보고 설계기준치-3532호 ('14.11.28) 에 따른 개정 ※ KR E-03220 지침(4.5m)과 일치</p>